

하나 현금IC카드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

1. 개정시행일 : 2016. 2 . 1

2. 개정내용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제 1 조 ~ 제 5 조 (내용생략)</p> <p>제 6 조(현금 IC 카드에 의한 거래)</p> <p>① (내용생략)</p> <p>② 서비스 이용시 은행은 PIN 번호, 계좌번호, 카드출금비밀번호가 사전에 은행에 신고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서비스 이용자를 신청인 본인으로 인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. 단, 현금 IC 카드에 계좌가 1 개만 등록된 경우에는 PIN 번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③~⑥ (내용생략)</p>	<p>제 1 조 ~ 제 5 조 (좌 동)</p> <p>제 6 조(현금 IC 카드에 의한 거래)</p> <p>① (좌 동)</p> <p>② 서비스 이용시 은행은 PIN 번호, 계좌번호, 카드출금비밀번호가 사전에 은행에 신고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서비스 이용자를 신청인 본인으로 인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. 단, 현금 IC 카드에 계좌가 1 개만 등록된 경우에는 PIN 번호 확인을 생략할 수 <u>있으며, 은행과 소액거래 (5 만원이하 거래)에 대하여 본인확인 생략 특약을 체결한 가맹점에서는 카드출금비밀번호 입력 생략이 가능하다.</u></p> <p>③~⑥ (좌 동)</p>	<p>본인확인절차생략 근거 명시</p>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제 7 조 ~ 제 12 조 (내용생략)</p> <p>제 13조(손실부담 및 면책)</p> <p>① 은행은 현금 IC 카드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금액과 1 년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한다.</p> <p>② (내용생략)</p> <p>③이용자로부터 현금IC카드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은행은 그 때부터 제3자가 현금IC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.</p> <p>④ 신고된 비밀번호와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현금이 지급되거나 결제승인이 된 경우 카드의 위조, 변조, 도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나 손해에 대하여 당행의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당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다만, 당행이 예금주의 카드가 위조, 변조, 또는 도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 7 조 ~ 제 12 조 (좌 동)</p> <p>제 13조(손실부담 및 면책)</p> <p>① (좌 동)</p> <p>② (좌 동)</p> <p>③이용자로부터 현금IC카드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은행은 그 때부터 제3자가 현금IC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. <u>다만,소액거래(5 만원 이하 거래)에 대하여 카드출금비밀번호 생략으로 결제 승인이 된 경우 예금주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은행에 신고하기 전에 발생한 손해를 포함하여 참가은행이 보상한다.</u></p> <p>④ (삭 제)</p>	<p>본인확인 생략에 대한 면책 예외 근거 명시</p> <p>①항과 내용 상충으로 삭제</p>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: 적용